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표 6-1 관광·휴양분야 시설의 종류란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제3호 표 6-1 공공·공용분야 시설의 종류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다음에 아래의 항목을 신설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제4호가목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4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등에 대해”를 “등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호 중 “법 제22조에 의거 당해 도로를”을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를”로, “법 제40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12호가목 중 “법 제40조”를 “법 제61조”로, 당해도로관리청“을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p> <p>다음 각호의 시설 중 <u>당해</u> 도로 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p>	<p>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p> <p>다음 각 호의 ----- <u>해당</u> -----</p> <p>-----</p> <p>-----</p> <p>-----</p> <p><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시설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 · 교통 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광 · 휴양 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 · 공용 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생 략)	관광 ·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공공 ·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시설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 · 교통 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광 · 휴양 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 · 공용 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 </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현행과 같음)	관광 ·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생 략)																
관광 ·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공공 ·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현행과 같음)																
관광 ·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 																

<p>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p>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p>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p> <p>·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가.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

나. 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가. -----

----- 해당 -----

나.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다. -----

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에 대해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 등
을 해당 -----
-----.
-----.

11. 설치허가 절차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2조에 의거 당해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11. 설치허가 절차

-----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를 -----
----- 법 제61조 -----
-----.

12. 허가신청서 처리

가. 피허가자는 법 제40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마. (생략)

12. 허가신청서 처리

가. ----- 법 제61조 -----
----- 해당 도로 관리청-----.

나. ~ 마. (현행과 같음)

참고 1 전국 공연장 현황

(2012. 12. 31 기준, 개)

지역	갯수	지역	갯수	지역	갯수	지역	갯수
서울	284	대전	23	충남	36	제주	27
부산	56	울산	10	전북	17	세종	1
대구	45	경기	122	전남	25	계	825
인천	38	강원	30	경북	33		
광주	20	충북	20	경남	39		

* 난타공연장 : 전국 4개(서울)

참고 2 관광특구 지정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시·도	특구명	시설명	갯수
서울(5)	명동·남대문·북창	메사고릴라전용관(구.메사팝콘홀) / 명동정동극장 / 해치홀 / 명동난타극장(구.명동아트센터) / 꼬스트홀 / 남산예술센터 / 한국의집 민속극장 / 서울남산국악당 / 강북정동난타극장 / 호암아트홀 / 문화일보홀 / 세실극장 / NH아트홀 / 명보아트홀 /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 삼일로창고극장 / 경향아트홀	177개소
	이태원	용산아트홀 / 전쟁기념관 / 블루스퀘어 /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플라자콘서트홀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극단 / 프로젝트박스 시아	7
	동대문패션타운	국립중앙극장 / 충무아트홀 / 스테이지팩토리홀 / 이해랑예술극장 / 여해문화공간	5
	종로·청계	시네코아비발전용관(구.점프전용관) / 시네코아비나리전용관(구.브레이크아웃전용관) / 서울극장 점프 전용관 / 종로구민회관 / 세종문화회관 / 종로문화체육센터	6
	잠실	아시아공원원형무대 / 서울놀이마당 / 올림픽홀 / 가든파이버아트홀 / 송파여성문화회관소극장 / 우리금융아트홀 / 유즈라이브 / K-아트홀 / NC소극장 / 롯데월드 / 송파통통이소극장	11
부산(2)	해운대	태종대 / 해운대연가 / 오션스카이 / 국민생활관소극장 / 신세계문화홀 / 롯데시네마센텀시티 / 영화의전당 / 해운대구문화회관	8
	용두산·자갈치	소극장실천무대 / 자유바다소극장	2
인천(1)	월미	코스모스호 공연장	1
대전(1)	유성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대학로21C소극장 / 편편아트홀 / 한국과학기술원대강당 / CMB엑스포아트홀 / 컨퍼런스홀(대전컨벤션센터)	6
경기(2)	동두천	동두천시민회관	1
	평택시 송탄	평택시북부문화회관	1
강원(2)	설악	속초시문화회관 / 고성문화의집 / 고성군문화복지센터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4
	대관령	강릉단오문화회관 / 강릉문화예술관 / 강릉원주대학교해람문화관 / 동해시문화예술회관 / 봉평달빛극장 /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 횡성문화관	7
충북(3)	수안보온천	-	0
	속리산	보은문화예술회관	1
	단양	단양문화예술회관	1
충남(2)	아산시온천	신정호야외음악당 / 아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 시민문화복지센터	3
	보령해수욕장	보령문화예술회관	1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에체문화관	1
	정읍 내장산	정읍시예술회관	1
전남(2)	구례	-	-
	목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 예술인사랑방 / 목포문화예술회관	3
경북(3)	경주시	경주시립극단연극전용수극장에울극장 / 서라벌문화회관 / 신라밀레니엄파크 / 경주시청소년수련관 / 안강문화회관 / 경주예술의전당	6
	백암온천	울진문화예술회관	1
	문경	문경시민문화회관	1
경남(2)	부곡온천	창녕문화예술회관	1
	미륵도	통영시민문화회관 / 벽수골소극장	2
제주(1)	제주도	오름홀 / 김정문화회관 / 해피타운 / (주)백생(구.점보빌리지) / 트리아트뮤지엄 / (주)이레몽골리안미싱쇼(구.주)이레제주조랑말타운) / 여항당 / 한라아트홀 / 제주문예회관 / 제주해변공연장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 제주대학교 이라뮤스홀 / 제주관광대학교컨벤션홀 / 그린리조트공연장 / (주)제주드림랜드 / 세이레아트센터 / 제주아트센터 / 제주난타극장 / 삼국지 / 더마파크공연장 / 제주아트리움 / 한라공연장 / 제주시민회관 / 제주국제대학교대강당 / 예술공간 오이 / 간드락소극장	26
13개 시·도 28개소			284

참고 3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 어린이집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관수	개소 (A)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비율)	100.0	5.3	3.3	2.0	33.7	54.0	0.3	1.4
아동수	정원 (B)	1,782,459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비율)	100.0	9.5	7.8	3.5	52.6	23.8	0.2	2.5
	현원 (C)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비율)	100.0	10.4	7.3	3.5	51.8	24.5	0.2	2.3
	정현원비율 (C/B)	83.4	90.8	77.9	82.3	82.1	86.0	81.2	77.0
직원수	인원 (D)	301,719	26,750	18,765	8,703	136,180	102,731	730	7,860
	(비율)	100.0	8.9	6.2	2.9	45.1	34.0	0.2	2.6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C/A)		34	66	76	60	52	15	25	56
직원 1인당 아동수(C/D)		4.9	5.8	5.8	5.9	5.7	3.5	4.4	4.4

* 출처 : 「보육통계」('13.12월)

○ 유치원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립
기관수	8,678(100)	4,577(53.0)	4,101(47.0)
아동수	658,188(100)	142,052(22.0)	516,136(78.0)

* 출처 : 교육통계('13.12월)

참고 4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 목 적

- 도로구역내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난립 방지, 도로이용자 편의, 교통안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

□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시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함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에 대해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 단,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함

□ 시설안내표지의 크기

-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
 - 1,200mm×850mm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mm×550mm : 시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mm×350mm : 시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 * 도로관리청은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 가능

□ 시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 바탕색상은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관광시설 안내 시 갈색 바탕의 표지판 사용

□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의한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광·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공·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 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및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 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참고 5 관련법령 발췌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